

##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기업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약관

### 제 1조 (적용 범위)

① 이 약관은 주식회사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이하 "은행" 이라 합니다)과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뱅킹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 를 이용하는 이용기관 (이하 "이용자" 라 합니다) 과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해당업무의 개별 약관을 따릅니다.

###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은행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하여 계좌이체, 예금·신탁계좌의 개설, 대출 및 기타 은행이 정하는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것을 총괄하여 지칭합니다.
2. "이용자"란 거래등록자, 확인자, 승인자 또는 총괄관리자의 각 권한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하며, 경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칭합니다.
3.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이용자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대한 처리시 이용자의 의사 확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비밀번호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5. "거래등록자"라 함은 개별금융 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최초로 등록할 권한이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6. "확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등록된 거래지시를 승인자의 승인 전에 확인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 결재상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7. "승인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보안매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등록된 거래지시를 승인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완성할 권한이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8. "총괄관리자"라 함은 개별 금융거래에 있어서 등록자, 승인자 및 확인자를 지정할 권한이 있는 다단계 결재상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9. "보안매체"라 함은 은행이 서비스 계약 시에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말합니다.

10. "보안매체 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상 정당한 처리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보안매체에서 발생한 번호를 말합니다.

11. "단독 결재"라 함은 등록자의 권한을 겸하는 승인자 1인의 거래지시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12. "다단계 결재"라 함은 등록자가 거래지시를 등록하고 승인자의 승인으로 전자금융거래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제 3조 (전자적 장치)

이용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 4조 (서비스의 종류)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터넷 बैं킹을 통한 각종 조회, 이체, 외환 등이며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합니다.

### 제 5조 (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은행이 이에 대하여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 6조 (결재 단계)

① 이용자는 단독 결재와 다단계 결재중 결재 단계를 선택하여야 하며, 지정된 결재 단계는 이용자가 은행과 협의한 방식으로 은행에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다단계 결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신청서에 총괄관리자에 의하여 "승인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지정하거나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통해 직접 "승인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은행은 이용자가 이용신청서에서 지정한 이용자 수의 수량만큼 보안매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 7조 (이용자의 지정·변경 및 권한 설정)

① 이용자의 지정은 은행과 협의한 방식으로 은행에 신청하여 지정합니다.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등록자, 확인자, 승인자를 변경하거나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총괄관리자는 거래등록자가 등록할 수 있는 거래 지시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③ 총괄관리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개별 금융거래에서의 이용자 등의 업무권한 (결재 참여 여부, 결재 순서, 이체 한도 등)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④ "승인자로 지정될 수 있는자"와 총괄관리자를 변경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은행과 협의한 방식으로 은행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서비스를 통하여 지정한 승인자의 변경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자가 총괄관리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기존의 총괄관리자에 의한 이용자의 지정·변경은 변경된 총괄관리자가 달리 변경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 제 8조 (이용자의 확인)

은행은 다음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내용중 은행이 요구하는 아래 해당 항목을 이용자가 입력했을때 동 내용이 은행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인터넷뱅킹 이용자 확인 항목: 이용자 당행 고객번호, 이용자 ID, 이용자 비밀번호, 로그인을 위한 확인 번호, 보안매체 비밀번호

## 제 9조 (이체 거래한도)

①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별표1]의 최고 한도 범위 내에서 1회 이체 한도, 1일 이체 한도 (이하 "통합 이체 한도"라 합니다) 를 정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제 1항에서 지정된 통합 이체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의 이자 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동일인 명의의 거래 금액 및 은행에서 지정한 일부 서비스는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 10조 (계좌이체 이용계좌)

① 이용자는 자신의 계좌이체 거래지시로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를 미리 은행과 협의한 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의 계좌이체 거래지시로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은행과 협의한 방식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항의 경우에는 지정된 입금계좌로의 계좌이체만 가능하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거래지시에서 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 제 11조 (거래지시의 일반적 처리기준)

① 은행은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와 이용자 비밀번호 및 보안매체 비밀번호가 은행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대조하여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지시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확인자 또는 승인자가 복수로 지정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가 각 이용자의 업무권한을 지정한 대로 처리합니다.

③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처리 완료된 거래지시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제 12조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처리기준)

- ①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은행이 거래지시의 내용을 확인한때에 거래가 성립합니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위해 필요한 이체자금은 이체지정일의 은행에서 정한 이체처리시간전에 출금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지불가능잔액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합니다.
- ② 이체실행은 1회의 실행으로 하고 이체불능건에 대한 재처리를 하지않습니다.
- ③ 이체 지정일에 복수의 예약이체 의뢰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접수 받은 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 ④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취소는 은행이 정한 시간전까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제 13조 (서비스의 제한과 재개)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연속하여 각자 입력한 이용자 비밀번호가 은행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각 5회 이상 다르게 입력된 경우 또는 OTP 발생기에서 생성된 비밀번호가 각 5회 이상 잘못 입력된 경우. (입력 오류의 횟수는 각 비밀번호 별로 합산하며 동일한 비밀번호가 다양한 형태의 전자금융거래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경우, 입력 오류 횟수는 이용되는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대하여 통산함.)
  2.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 및 영업일이 아닌 경우
  3. 사고신고 접수된 서비스. 단, 사고신고 되지 않은 서비스는 이용 가능
- ② 서비스가 제한된 경우 이용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한 등록자, 확인자 및 승인자가 이용자 비밀번호를 전 항 1호 에서 정한 횟수 이상 연속하여 은행에 신고 또는 등록된 것과 다르게 입력하여 서비스 이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제 14조 (수수료)

- ①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은행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은행은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되는 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인출 합니다.
- ② 기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는 영업점 또는 이용매체를 통하여 안내하고, 수수료의 납부 방법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 9조 제 1항에서 정한 것을 따릅니다.

## 제 15조 (분실신고 및 제변경)

- ① 보안매체의 분실, 도난 및 각종 비밀번호 누설 등 사고발생 시에는 즉시 거래 영업점에 은행과 협의한 방식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은행과 협의한 방식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수단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 후 익영업일까지 은행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 사고발생 사실을 거래영업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은행에 신고한 출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한 방식으로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체계좌 및 입금계좌로 지정된 계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③ 이용자가 은행에 신고한 이체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과 협의한 방식으로 은행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단, 다단계 결재로 사용하는 경우, 총괄관리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정한 등록자, 확인자 및 승인자의 한도를 은행에 신고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용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 16조 (거래내용의 확인)**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 17조 (계약의 해지 및 해지 사유)**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2.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범죄수익의 은닉,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 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이용자는 은행에 대하여 서면(은행과 협의한 방식으로)에 의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8조 (손실부담 및 면책)**

본 약관에 의한 서비스와 관련한 은행의 손실 부담 및 면책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 19조 (관할법원)**

① 본 계약상의 해석이나 이해에 있어 상호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협의를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②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전항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0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본 약관의 각 당사자는 이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별표1] 이체 최고한도 범위**

구 분	고객당 1일 이체한도	1회 이체한도
인터넷뱅킹	50억원	5억원

※ 기타 세부기준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별표2]수수료**

서비스 종류	징수방법	산출기준	수수료금액	비고
자금이체 수수료	즉시	처리건당	당행 : 무료 타행 : 500원	-

※ 기타 세부기준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1조 (약관 변경)**

본 약관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